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정 많음!
서울교육 바람!

2026년 학교법인 정신학원 및 정신여자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수정안)(감사관-20883, 2025. 12. 31.)
- 2026년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추진계획(안)(감사관-1535, 2026. 1. 30.)
- 2026년 상반기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실시 통보(감사관-2214, 2026. 2. 11.)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대안 제시로 학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학교법인 정신학원 및 정신여자고등학교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3월 감사일 현재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학교법인회계 운영 및 학교회계(예·결산 및 세출)
-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사(성적관리, 생활교육, 학교생활기록부)
- 교직원 인사관리(채용 전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계약(물품, 용역, 공사) 및 물품·재산관리
- 세입(전입금,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세출외현금
- 교직원 복무 관리
- 급여(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3. 17.(화) ~ 3. 18.(수) [2일간]
- 감사인원: 감사단장 외 6명

5. 처분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고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의견 변경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 예산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학교법인 정신학원
내 용

1. 업무개요

학교법인 정신학원에서는 2024. 2. 28. 및 2023. 9. 30. 기준으로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유사경력 보유자 사무직원 2명에 대해 급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력기간 산정에 따른 호봉 확정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학교법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제20조(성립 전 예산의 집행 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인회계 집행 시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학교법인 정신학원에서는 사무직원의 호봉 확정 오류로 과다 지급한 인건비 금29,040,740원을 환수하면서, 법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직원 2명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학교법인 회계(기타전출금)에서 금17,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후 이를 각 사무직원의 개인 납부액 금12,040,740원과 합산하여 교비회계로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법인회계 전출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사무직원 급여 자율점검 결과 환수금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원)

소속	직급	성명	점검 결과 과다 지급액	급여 환수 내역			지급 계좌	비고
				법인회계 부적정 집행액 * 지급일: 2024. 10. 28.	개인 납부액	계		
정신여자 중학교	△△△	☆☆☆	19,046,390	10,000,000	9,046,390	19,046,390	◇◇(◇◇◇) ◇◇◇◇◇◇◇◇	기타전출금 예산 초과
정신여자 고등학교	△△△	○○○	9,994,350	7,000,000	2,994,350	9,994,350	◇◇◇(◇◇◇) ◇◇◇◇◇◇◇◇	
합계			29,040,740	17,000,000	12,040,740	29,040,740		

※ 자료: 학교법인 정신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은

- ① 앞으로는 법인회계 예산을 집행할 때 법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목적외 예산을 사용하거나 절차를 미준수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② 이 건 관련으로 “기관경고” 처분합니다.
- ③ 사무직원 환수금 정산 과정에서 법인회계의 기타 전출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17,000,000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5조(감사결과 처리 종류 및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 처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처리 절차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제22조(인정점 부여)에 따르면, 교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인정점의 비율 및 인정점 산출 방식 등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근거(인정 사유, 인정점 비율, 산출식 등) 및 최종 인정점수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표 1]과 같이 2023. 3월부터 2026.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고사 과목별 결시생 2023학년도 203명, 2024학년도 202명, 2025학년도 355명, 총 760명에 대하여 인정점을 부여¹⁾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지 않아 결시생 인정점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2023~2025학년도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내역

학년도	학기	고사명	결시생 발생 과목	결시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비고
2023	1	중간고사	21과목	54명	미심의	
		기말고사	37과목	68명	미심의	
	2	중간고사	26과목	54명	미심의	
		기말고사	20과목	27명	미심의	
	소계			203명	203명 미심의	
2024	1	중간고사	29과목	59명	미심의	
		기말고사	27과목	37명	35명 미심의 (질병결석 미응시생 2명 제외)	
	2	중간고사	14과목	33명	미심의	
		기말고사	25과목	75명	미심의	
	소계			204명	202명 미심의	
2025	1	중간고사	16과목	34명	33명 미심의 (시험과목 착오로 선택과목 미응시생 1명 제외)	
		기말고사	27과목	48명	미심의	
	2	중간고사	31과목	107명	미심의	
		기말고사	21과목	167명	미심의	
	소계			356명	355명 미심의	
합계				763명	760명 미심의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 재구성

1)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결시 사유에 따른 인정점 비율은 적정하게 정함.
- 100% 인정점 부여(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경조사로 인한 결시 등), 80% 인정점 부여(질병, 생리통,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사유에 의한 결시 등),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미인정 결석, 징계로 인한 결시 등)

3. 출석인정 결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및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제8조(결석 처리)에 따르면, 학생의 결석일수(질병·미인정·기타 결석)와 출석인정 결석일수의 총 합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도달할 경우, 다음날부터의 출석인정 결석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의 2023~2025학년도 수업일수 190~191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일수는 63.333...~63.666...일이므로, 64일부터의 출석인정 결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표 2]와 같이 2023. 3월부터 2026.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출석인정 결석일수의 총 합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한 학생 6명(2023학년도 2명, 2024학년도 1명, 2025학년도 3명)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석인정 결석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3~2025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내역

학년도	학번	이름	결석 내용					수업일수의 1/3 도달 이후 결석 내용 ²⁾				
			질병	미인정	기타	인정	계(A)	계(B) ³⁾	질병	미인정	출석인정	
											일수	심의 여부
2023	○○○	▼▼▼	54	4	0	8	66	3	2	0	1	미심의
	○○○	▲▲▲	50	13	0	8	71	8	4	2	2	미심의
2024	○○○	◎◎◎	8	51	0	15	74	11	0	2	9	미심의
2025	○○○	♣♣♣	37	9	0	22	68	5	1	3	1	미심의
	○○○	▲▲▲	49	3	0	14	66	3	1	1	1	미심의
	○○○	☆☆☆	51	0	0	19	70	7	6	0	1	미심의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신여자고등학교장은

앞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에 따라 정기고사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및 수업일수의 3분의 1 도달 이후 출석인정 결석 허가와 관련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 2)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칙” 제14장(체험학습)에 따르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국내는 10일, 국외는 연속하여 10일까지(공휴일 제외)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규칙을 위반하지는 아니함
- 3) (B): (A)-6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편성 및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비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예산과목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원가통계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출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품의를 하고, 결재

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지침에 따라 지출 건당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3~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표 1-1], [표 1-2] 과 같이 비품 성격의 물품 구입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다과 구입을 운영수당으로 집행하는 등 해당 지출 내역의 성격에 맞지 않는 원가통계비목으로 총 35건, 금64,680,097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1-1]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유형별)

(단위: 건, 천원)

유형	지출 건명	지출 성격	원가통계비목		건수	금액	비고
			정당과목	착오과목			
①	노트북 구입 등 3건	비품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3	40,899	
②	도서관 물품 구입 등 25건	물품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등	운영수당	25	19,346	주로 '정보화실 운영' 및 '독서활동 운영'에서 착오 지출
③	무선마우스 구입	물품		목적사업업무추진비	1	914	
④	다과비 등 6건	다과 구입 및 식대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6	3,521	
계					35	64,680	

[표 1-2]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회계연도별)

(단위: 건, 원)

회계 연도	유형별 건수 및 집행액								계	
	①		②		③		④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1	20,957,170	7	5,773,541	1	914,300	3	1,238,390	12	28,883,401
2024	1	15,100,000	14	13,135,646	－	－	2	686,300	17	28,921,946
2025	1	4,842,000	4	436,750	－	－	1	1,596,000	6	6,874,750
계	3	40,899,170	25	19,345,937	1	914,300	6	3,520,690	35	64,680,097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자료 제출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또한, 2023학년도부터 2026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표 3] 과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총 28건, 금21,926,385원에 대해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2023~2025학년도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시 명단 미첨부 내역

(단위: 건, 원)

회계연도	참석자 명단 미첨부 내역		비고
	건수	금액	
2023	11	9,427,300	참석자 명단 미첨부
2024	9	6,156,695	
2025	8	6,342,390	
계	28	21,926,385	

※ 정신여자고등학교 자료 제출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신여자고등학교장은

앞으로는 교비회계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 하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재물조사 미 실시 및 물품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정신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보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자를 두고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관리하며, 취득 물품에 대한 대장 정리 및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물품관리자(학교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물품의 관리 의무) 및 제50조(물품의 관리)에 따라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물품 수량, 상태, 위치 및 수급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물품 관리자를 지정

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표 1]과 같이 2023년부터 2026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4년간 재물조사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에서 전자제품 등 주요 물품을 중심으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노트북 1대가 망실⁴⁾된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2023~2026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내역

연번	학년도	재물조사 실시여부 (O,X)	비고
1	2023	X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말을 기준으로 실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
2	2024	X	
3	2025	X	
4	2026.3월(감사일 현재)	X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자료 제출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또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에 의해 비품목록에서 소모품 및 비품을 구분 정리하여 비품인 경우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3년 동안 취득한 비품을 취득 당시가 아닌 본 감사 개시 통보 이후인 2026. 3. 11. 및 2026. 3. 16. 2일에 걸쳐 일괄 등재함으로써 총 113건, 금6억 4천만원 상당의 물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노트북 망실 관련: 2026년 3월 19~23일(3일간) 실시한 사안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병합하여 처분할 예정임

[표 2] 2023~2025학년도 취득물품 관리 부적정 내역(단가 50만원 이상)

(단위: 건, 원)

연번	학년도	취득물품 건수 (단가 50만원 이상)	지출금액	물품대장 등재여부	
				등재여부 (O,X)	등재일자 (사후 등재)
1	2023	27	97,017,730	O	2026.03.11
2	2024	50	131,228,403	O	또는
3	2025	36	413,678,770	O	2026.03.16
계		113건	641,924,903원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자료 제출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정신여자고등학교장은

앞으로는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물품관리 대장을 정리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2026학년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정신여자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에서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35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영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전문공사는 2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1억 6천만 원 초과)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공사 중 추정가격 2천만 원(영 제26조

제1항제5호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시에는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2023학년도 정신여고 체육관 개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인 경우)을 초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3학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강당 애니멀러스홀 시청각실 개선공사 외 1건”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번	계약명	계약자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비고
						적정	착오	
1	2023학년도 정신여고 체육관 개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 대표 ○○○	57,193,349	55,000,000	2023.03.24.	일반경쟁 입찰 또는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여성 기업
2	2023학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강당 애니멀러스홀 시청각시설 개선 공사	♣♣♣♣♣ 대표 ○○○	20,909,000	20,962,720	2024.02.13.			
3	2026년 교학점제대비 학생용 학습 및 휴게공간 조성 사업 전기공사	▼▼▼▼▼ 대표 ○○○	21,732,184	21,500,000	2026.02.06.			

※ 자료: 정신여자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조치할 사항

정신여자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